

제 781 호
1980. 5. 28

《발행인》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면 집 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전화 7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청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주	제 1428 호 : 서울특별시하천점용토등질수조해중개정조례	3
◎ 고	제 178 호 : 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인가고시	3
	제 179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외형차) 결정및지적승인	4
	제 180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	4
	제 181 호 : 서울특별시자하철 2호선일부역간영업거리고시	5
◎ 공	제 17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6
◎ 출석통지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정 삼 천 (인)
1980.5.28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28 호

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
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중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산 정 기 준
8. 로석사력의 채취	1.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로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2. 제 1호의 조사는 공신력있는 2개 이상의 조사기관에 의하여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산정기준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.

보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8 호

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인가고시

1. 서울특별시공고제 111 호 (80.4.8)

토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한 바 있는 수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향운 1, 2, 아현 1, 전동 1, 2, 용암 2 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심의 조정 변경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에 의거 변경인가 고시하며

2. 동계획 일부 변경 공람 공고시 제한시킨 사용수익을 해제하여 동계획 일부 변경인가 비용을 개별 통지할 것이며 관제도서는 서울특

별시 건축국 재개발2과 및 관할
구청(수색과, 시민봉사실)에 비치
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80.5.28

서울특별시 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79 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

청사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
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
조와 동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
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
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
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보인다.

1980.5.28

서울특별시 시장

○ 시설 조 서

구분	시설물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중로구 경운동 90-18 및 관훈동 85일대	4,735㎡	지적승인포함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80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
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도시계
획시설(학교, 도로)이 서울특별시
고시 제 160 호(80.5.12)에 의거
결정 및 변경 결정되었기 도시계

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
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사
항에 의거 이를 지적승인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
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인다.

1980.5.28

서울특별시 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조서		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	비고		
신설	남가좌국민학교	마포구 중동 43일대	13,084(㎡) (3958평)				
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
①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조서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류	8미터	90미터	중동64-54일대	중동41-1일대	폐지
변경	"	"	"	"	"	"	
신설	"	3류	6미터	82미터	중동46-1일대	중동31-3일대	
신설	"	"	"	146미터	중동39일대	중동31-3일대	
* 별첨도면 생략		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1호</p> <p>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일부역간 영업거리고시</p> <p>철도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철</p>					<p>2호선 강남구간 일부전설 (구청앞역 - 대운동장역) 구간의 역간 영업거리 (㎞)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.</p> <p>1980.5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지하철 2호선역간영업키로							
역간거리 (환산) ㎞	환산누계거리 ㎞	역명		비고			
2.1	2.1	구	청	앞	역		
1.0	3.1	신	남	역			
2.3	5.4	기	지	역			
1.2	6.6	성	수	역			
1.6	8.2	화	양	역			
0.9	9.1	구	외	역			
1.8	10.9	강	변	역			
1.0	11.9	성	내	역			
1.2	13.1	잠	실	역			
1.2	14.3	신	천	역			
		대	운	동	역	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도제 415-3887(71. 10.13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변경 고시된 하월곡4동 지내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며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
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1. 사업장 위치 : 성북구 하월곡동 59의 13-77의 794간 도로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하월곡4동 지내 도로확장공사
3. 사업의 규모 : B = 6
L = 220 m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80.6.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다음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다음

공사토지가격조서

19 사정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면적	산술평균치	사 장		소 유 자	
					단가	금액	주소	성명
1	하월곡동 59-22	대	17				하월곡동 59-1	장 총 각
2	" 58-12	"	9				" 58-2	이 국 영
3	" 59-23	"	143				" 59-2	이 길 용
4	" 58-9	"	10				" 58-2	이 국 영
5	" 58-10	"	19				"	"
6	" 59-24	"	119				하월곡동 59-5	이 영 근
7	" 59-26	전	7				" 59-6	이 재 호
8	" 59-25	"	29				" 59-13	권오연외3인
9	" 77-957	대	11				" 77-954	이원태외6인

공사건물가액조서

19 사정

번호	소재지	구조	수용면적	한술 평균치	사정		소유자	
					단가	금액	주소	성명
1	하월곡동 59-1	연와조명육개 새멘보릭조 스베트집주액집포	19㎡				하월곡동 59-1	장중자
2	59-15	연와조새멘 와습주액	5㎡				하월곡동 59-15	최윤석

인사위원회 출석통지

(1) 인적사항
 소속 : 마포구청 주택과
 직명 : 지방행정주사
 성명 : 김 동 슬
 본적 : 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
 117-14
 주소 : 서울시 은평구 용암동

82-25

(2) 출석이유 : 징계협의 (자)
 (3) 출석일시 : 1980.6.11 (수)
 14:00 시
 (4) 출석장소 : 마포구청 총무국장실
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조
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(인)